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8.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7.22.)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민전의원)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의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
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
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형평성 확보 차
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⑧ (생략)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있으며,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4조¹⁾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²⁾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2) 고등기술학교는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현재 경남전자고등학교, 금호미용예술학교,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한국제과학교 5개교가 있음.

를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³⁾은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공대학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 제31조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런 규정들을 근거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

3)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4) 2007년 12월 고등기술학교 전공과가 전공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후, 서울 소재 해당 학교 4개교 중 3개교(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가 2008년 2월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받음.

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됨.

반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의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달리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원칙적으로 「상훈법」의 목적과 서훈의 원칙⁵⁾에 따르면 상훈의 대상을 공무원 또는 국·공립교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방국 국민 등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교원뿐만 아니라 전공대학의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상훈법」 제9조⁶⁾에 따른 상훈 중 동조 제5호 근정훈장을 규정한 동법 제14조⁷⁾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평

5) 「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6) 「상훈법」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7)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가 전공대학으로 전환한 전공대학의 교원은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과 달리 「상훈법」 상 근정훈장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공대학 교원이 근정훈장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고등기술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배치 및 국·공립 교원 규정 준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상훈법」 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공대학 교원의 질 향상과 함께, 전공대학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전공대학의 책무성 확보와 법적 위상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⁸⁾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8) 최돈민 등 5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전공대학 제도개선 방안, pp3~4, 2014., 교육부

“전공대학은 4년제대학/전문대학과 달리 정보공시, 졸업생 취업률 조사 등을 적용받지 않아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전공대학의 경우 부실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중 략 ...) 기존 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등기술학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명칭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용어가 각기 달라 혼선이

전공과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과 동등한 대학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공대학의 법적 위상의 혼란으로 인하여 전문대학 학력 인정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통일하여 규정하도록 함.

[붙임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있다”를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
① · ② (생 략)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 -----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
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
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

⑧ (현행과 같음)